2011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

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1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월 5일 **지식경제부 장관**

「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」은 산업, 정보통신, 에너지 · 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 소관의 R&D사업을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

1 공통사항

■ 신청자격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
- 국 · 공립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, 산업기술연구조합, 전문생산기술연구소
- 대학, 산업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
- 한국디자인진흥원, 산업디자인전문회사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생산성본부, 정보통신산업진흥원
- 사업자단체, 산업기술단지(테크노파크)사업자
-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
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소기업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
- 「민법」 제32조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 ·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의한 비영리 연구법인

※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

■ 신청방법
-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

■ 사업공고
-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, 지식경제R&D종합정보시스템(www.ernd.go.kr)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(문의처 참조)에 공고

■ 출연금 지원 기준
-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,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
-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,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
-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(예: 산업기술개발사업)
  - 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
    ·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: 총사업비의 50% 이내
    ·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: 총사업비의 75% 이내
  -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
    ·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: 총사업비의 75% 이내
    ·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 미만인 경우 : 총사업비의 50% 이내

■ 민간부담현금 비율 조건
- 사업별 특성에 따라 민간부담현금의 부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참조
-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의 경우(예 : 산업기술개발사업)
  - 중소기업이 주관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 : 민간부담금의 10% 이상
  - 그 밖의 경우 : 민간부담금의 20% 이상

■ 기술료
- 기술료율,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별 공고시 별도 안내

■ 지원제외
-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
  -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
  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참여기관, 총괄책임자)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(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)
  - 채무 불이행자(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) 등

※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, 정부출연금 지원조건,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

※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전담기관 및 지식경제R&D종합정보시스템(www.ernd.go.kr)에 공지함

※ 지식경제부의 전체 시행사업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(itech.keit.re.kr), 지식경제R&D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('11년 1월 12일 서울 설명회 이후)

2 사업별 지원 계획

(1)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

〈산업융합원천기술 분야〉
① 신산업(4) : 로봇, 바이오 · 의료기기, 지식서비스/USN, 산업기술융합
② 주력산업(4) : 수송시스템, 산업소재, 제조기반, 플랜트엔지니어링
③ 에너지(3) : 에너지자원, 신 · 재생에너지, 전력, 원자력
④ 정보통신(5) : 전자정보디바이스, 정보통신미디어, 차세대통신네트워크, S/W · 컴퓨팅, 디지털콘텐츠

가. 신산업 분야 (4개)

■ 지원규모 : 3,151억원(신규 801억원, 계속 2,350억원)
- 로봇 : 699억원 (신규 287억원, 계속 412억원)
- 바이오 · 의료기기 : 951억원 (신규 131억원, 계속 820억원)
- 지식서비스/USN : 556억원 (신규 100억원, 계속 456억원)
- 산업기술융합 : 945억원 (신규 283억원, 계속 662억원)

■ 지원내용
- 4대 신산업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100대 전략제품기술 중심으로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7년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0. 8 ~ '11. 3 : 연구기획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 ~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~ 6 : 협약체결

나. 주력산업 분야 (4개)

■ 지원규모 : 2,814억원(신규 937억원, 계속 1,877억원)
- 수송시스템 : 1,125억원 (신규 600억원, 계속 525억원)
- 산업소재 : 742억원 (신규 219억원, 계속 523억원)
- 제조기반 : 857억원 (신규 99억원, 계속 758억원)
- 플랜트엔지니어링 : 90억원 (신규 19억원, 계속 71억원)

■ 지원내용
- 4대 주력산업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100대 전략제품기술 중심으로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7년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0. 8 ~ '11. 3 : 연구기획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 ~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~ 6 : 협약체결

다. 정보통신 분야 (5개)

■ 지원규모 : 3,772억원(신규 1,180억원, 계속 2,592억원)
- 전자정보디바이스 : 1,313억원 (신규 326억원, 계속 987억원)
- 정보통신미디어 : 406억원 (신규 70억원, 계속 336억원)
- 차세대통신네트워크 : 298억원 (신규 60억원, 계속 238억원)
- S/W · 컴퓨팅 : 1,517억원 (신규 696억원, 계속 821억원)
- 디지털콘텐츠 : 238억원 (신규 28억원, 계속 210억원)

■ 지원내용
- 5대 산업원천기술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5년 이내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0. 8 ~ '11. 3 : 연구기획
- '11. 3 ~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 ~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~ 6 : 협약체결

라. 에너지 분야 (4개)

■ 지원규모 : 6,615억원(신규 1,974억원, 계속 4,641억원)
- 에너지 · 자원 : 2,153억원 (신규 533억원, 계속 1,620억원)
- 신 · 재생에너지 : 2,433억원 (신규 1,042억원, 계속 1,391억원)
- 전력 : 1,088억원 (신규 278억원, 계속 810억원)
- 원자력 : 941억원 (신규 121억원, 계속 820억원)

■ 지원내용
- 4대 에너지기술 분야의 핵심 · 원천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기술위원회 등을 통해 상시 과제발굴 및 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7년 이내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0. 9 ~ '11. 3 : 연구기획
- '11. 4 : 사업공고
- '11 5 ~ 6 : 접수 및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2)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핵심부품소재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핵심부품소재의 자립화로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

■ 지원규모 : 1,760억원(신규 290억원, 계속 1,470억원)
- 단독주관 521억원(신규 180억원), 공동주관 1,239억원(신규 110억원)

■ 지원내용
- 핵심 부품 소재의 수입대체 개발 및 원천기술 개발에 대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,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
- 지원조건 : 과제 성격에 따라 연간 7~15억원 내외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1. 3 ~ 4 : 사업공고
- '11. 5 ~ 6 : 기술성 평가(단독, 공동주관)
- '11. 8 : 사업성 평가(단독주관)
- '11. 4 ~ 5 : 접수
- '11. 7 ~ 9 : 협약체결

(3)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(주력 및 신산업)

■ 사업개요
-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 · 중견기업의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달성

※ R&D 사업체계 개편에 따라 분야별 종소 · 중견기업 지원사업을 '신시장 창출' 프레임워크 內 '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'으로 통합 운영하며, 각 세부사업별 상세 개요 참조

■ 지원규모 : 1,614.9억원(신규과제 680.6억원, 계속과제 934.3억원)

※ 세부사업별 상세 지원 규모 등을 참조

■ 지원내용(공통사항)
- 지원대상 : 주관기관은 중소 · 중견기업이며,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. 단,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은 제한 또는 상이할 수 있으며, 상세 내용은 해당 세부사업 신규사업자 선정 공고시 안내 예정임
- 지원기간 및 금액 : 각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참조

가.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(ATC)

■ 사업개요
- 세계 일류기술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중 지원

■ 지원규모 : 508억원(신규과제 170억원, 계속과제 338억원)

■ 지원내용
- 지원대상 : '10년 매출액 중 수출 비중(제조업 분야는 10% 이상이고,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)과 R&D 투자액 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

※ 글로벌 ATC사업(WATC) 신청자격은 세부 사업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

- 지원기간 :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이며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평가를 통해 차기단계 지원
- 지원금액 : 센터당 연간 5억원 이내(글로벌 ATC사업(WATC)은 연간 8억원 내외)
  - 기술개발사업비의 50%까지 지원하고, 핵심연구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

■ 추진일정
- '11. 2 ~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6 :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
나. 글로벌전문기술개발-주력산업 및 신산업(World-Class 300)

■ 사업개요
- 글로벌 성장전략과 기술혁신역량 보유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분야 중소 · 중견기업을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
  - "World-Class 300"사업 : 글로벌 시장 진출과정에서 지원수요가 큰 R&D, 전문인력, 자금, 해외 마케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

■ 지원규모 : 298억원(신규 156억원, 계속 142억원*)
* 舊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계속과제 지원 금액임

■ 지원내용
- 총 개발기간 5년 이내, 연간 15억원 내외의 기술개발(R&D) 자금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1. 1~3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3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4 :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
다. 섬유패션스트림간 협력기술

■ 사업개요
- 섬유산업패션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: 섬유패션 스트림간(또는 섬유패션산업과 타산업간) 기획~디자인~개발~생산~마케팅 등에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컨소시엄에 대해 공동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여 신기술 및 마케팅 제품개발 촉진
- 생활산업(구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) : 기존 생활용품 산업에 최근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대응한 고기능, 고감성 기술을 융 · 복합화하여 고부가가치 실현이 가능한 8대 생활용품 기술개발 지원

■ 지원규모 : 331억원
- 섬유스트림 : 신규 174억원, 계속 117억원
- 패션스트림 : 신규 10억원
- 생활산업(구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) : 신규 20억원
- 기획사업비 등 : 10억원

■ 지원내용
- 지원분야
  - 섬유스트림 : 산업용섬유, 의류용섬유, 생활용섬유, 융합 등 4대 섬유분야를 지원(3개 이상의 기업 및 3개 이상의 단위스트림이 참여한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의 컨소시엄)
  - 패션스트림 : 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이 포함된 의류용섬유, 생활용섬유, 융합 등(패션 디자인 개발기업을 포함한 2개이상 기업이 참여한 기업, 연구소, 대학 등의 컨소시엄)
  - 생활산업(구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) : 신발, 안경, 문구, 완구, 가구, 스포츠 · 레저용품, 보석 및 귀금속, 주방용품 등 8대 생활용품 분야
- 지원조건
  - 섬유스트림 : 2년 이내, 연간 10억원 내외
  - 패션스트림 : 1년, 연간 1~2억원 내외
  - 생활산업(구 웰빙친화적기술개발사업) : 2년이내, 연간 3억원 이내

■ 추진일정
- '11. 1~3 : 지정공고 품목 도출을 위한 기획사업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라. 해양레저장비, 자전거 전문기술

■ 사업개요
- 해양레저장비 전문기술 : 소득증가 및 여가문화 확산에 따른 국내 · 외 해양레저장비 시장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모터보트, 요트 등 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
- 자전거 전문기술 : 녹색산업형 고부가가치 자전거 전략 부품 · 소재 및 완성품 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 육성

■ 지원규모
- 해양레저장비 전문기술 : 34.5억원 (신규 4.54억원, 계속 29.96억원)
- 자전거 전문기술 : 51.5억원 (신규 16.7억원, 계속 34.8억원)

■ 지원내용
- 지원분야
  - 해양레저장비 전문기술 : 지정품목(자유공모) : 해양레저장비 관련 부품, 소재, 완제품 등 공고시 지정된 품목
  - 자전거 전문기술 : 지정품목(자유공모) : 자전거 관련 부품, 소재, 완제품 등 공고시 지정된 품목
- 총 지원기간 : 3년 내외

■ 추진일정
- '11. 1~3 : 지정공고 품목 도출을 위한 기획사업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마. 청정생산기반 전문기술

■ 사업개요
- 제품 및 생산 全과정에서 자원효율성을 높이고 오염배출을 최소화하여 환경규제 대응 및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지원으로 중소 ·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

■ 지원규모 : 240억원(신규 30억원, 계속 210억원)

■ 지원내용
-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연간 3억원 ~ 10억원 내외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1. 1~3 : 지정공고 품목 도출을 위한 기획사업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바. 디자인기술개발

■ 사업개요
-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디자인기업의 Total Design 능력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술개발 지원

■ 지원규모 : 105억원(신규 90억원, 계속 15억원)

■ 지원내용
- 2년 이내(지원 세부내용은 전담기관이 별도 공고)

■ 추진일정
- '11. 1~3 : 지정공고 품목 도출을 위한 기획사업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4)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(정보통신)

■ 사업개요
- IT분야 핵심 잠재 기술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 통한 중소 ·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을 촉진

■ 지원규모 : 277억원

■ 지원내용
- IT산업, IT융합 및 지식정보보안분야 중단기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당 연간 10억원 내외로 지원
- 총 기술개발기간 3년 이내에서 지원하며, 성과 우수기업은 차년도 지원대상에 포함
- 지원대상 : 기업 단독 또는 산 · 학 · 연 컨소시엄

■ 추진일정
- '11. 3 ~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 ~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: 협약 체결

(5) 시스템반도체상용화 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시스템반도체산업에 본격 진입하기 위하여, 시장 규모가 크고 국내 수요시장(Captive market)이 있는 휴대폰, 디지털가전,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

■ 지원규모 : 150억원(신규 150억원)

■ 지원내용
- 휴대폰, 디지털 가전, 자동차용 반도체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집중 지원하며,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2~5년 이내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1. 1 ~ 5 : 연구기획
- '11. 5 ~ 6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6 ~ 7 : 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

(6)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

■ 사업개요
- 신성장동력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 7대 분야 장비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

■ 지원규모 : 240억원

■ 지원내용
- 7대 분야별 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상용화 기술개발 및 공통핵심기술개발 지원
  -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: 신성장동력 7대분야 장비의 상용화 기술개발
  - 공통핵심 기술개발 : 복수 장비에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개발

※ 7대분야 : 반도체, 디스플레이, LED, 그린수송 장비, 바이오, 의료, 방송장비
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
※ 장비상용화 기술개발의 주관기관은 기업만 가능하며, 대학 및 연구소 참여 가능

- 지원조건
  - 장비상용화 기술개발 : 개발기간 3년~4년이내
  - 공통핵심 기술개발 : 개발기간 2년~4년이내

■ 추진일정
- '11. 1 ~ 2 : 기술수요조사
- '11. 2 ~ 3 : 사전 기획
- '11. 3 : 사업공고 및 예비사업자 접수
- '11. 4 ~ 5 : 예비사업자 연구기획
- '11. 5 ~ 6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7)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온실가스 저감과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의 Key Technology인 이차전지의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을 지원

■ 지원규모 : 30억원(신규 30억원)

■ 지원내용
- 국산화율 20%미만인 핵심부품소재 중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리튬이온폴리머전지용 리드탭과 파우치의 개발기술을 지원하며, 수요조사 및 기술기획을 추진하여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사업자단체 등
- 지원조건 : 3~7년 이내, 과제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1. 1 ~ 5 : 연구기획
- '11. 5 ~ 6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6 ~ 7 : 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

(8)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사업

■ 사업개요
- 모바일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모바일 융합 기술개발, 모바일기기 인증, 모바일 필드테스트, 사업화 마케팅 등 제품개발 全 주기 One-stop 지원시스템 구축

■ 지원규모 : 222.4억원(신규 16.9억원, 계속 205.5억원)

■ 지원내용
- 모바일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모바일 융합산업 시대로의 진화에 대응한 모바일 선도 제품 기술 개발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2~3년 이내,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개발비용의 3/4까지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1. 3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: 협약체결

(9)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항공우주 부품 · 소재 기술개발로 세계적 항공우주부품 공급 기지화 및 항공우주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

■ 지원규모 : 170억원(신규 71억원, 계속 99억원)

■ 지원내용
- 사업화 목적의 항공기 탑재부품 상용기술개발 및 기술 자립화 ·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단기(3년 이내), 중장기(5년 이내;1단계 3년, 2단계 1~2년) 기술개발 비용의 50~100%까지 지원

■ 추진일정
- '11. 1 ~ 2 : 과제기획
- '11. 3 ~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10) 차세대 중형항공기 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차세대 중형항공기(72/88인승 터보프롭) 국제공동개발을 통한 민수 완제기 세계시장 진출 및 국내 항공산업 자립기반 구축

■ 지원규모 : 110억원(신규 110억원, '11년 신규사업)

■ 지원내용
- 공고시 수행조건에 따라 기관단독 또는 산, 학, 연 및 국외기업 등간의 공동개발 형태로 수행되며, 출연(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매칭)형태로 지원
- 지원조건 : 중형항공기 개념연구와 체계개발로 구분하여 개념연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예정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(사업특성 및 과제성격에 따라 공고시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)

■ 추진일정
- '11. 6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7 : 협약체결

※ 상기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음

(11)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사업

■ 사업개요
- 지능형자동차 분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와 후발국의 추격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 육성

■ 지원규모 : 165억원

■ 지원내용
- 지능형자동차 핵심요소부품, 모듈, 시스템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기술개발 및 기반과제로 구성되며, 과제당 5년 이내

■ 추진일정(신규가용예산 발생시)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12)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

■ 사업개요
-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 지원

■ 지원규모 : 128.5억원(계속 95억원, 신규 33.5억원)

■ 지원내용
- 아라미드 섬유, 초고분자 PE섬유 소재를 중심으로 소재 및 융합제품 개발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으로 구성되며, 과제당 2년 이내 연간 5억원 내외

■ 추진일정
- '11. 3 ~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13) 디자인기업역량강화사업

■ 사업개요
- 자체적 디자인 역량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자인기업 육성

■ 지원규모 : 40억원

■ 지원내용
- 지원분야 : 디자인 전반
- 총 기술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지원(세부내용은 추후 공고문 참조)
- 지원대상 : 디자인전문회사

■ 추진일정
- '11. 1 : 연구기획
- '11. 2 : 과제공고 및 접수
- '11. 3 ~ 4 : 사업자 선정
- '11. 5 : 협약 및 사업비 지급

(14) 탄소밸리구축사업

■ 사업개요
-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소재 기술경쟁력 확보 및 비즈니스 신규 수요 창출

■ 지원규모 : 50억원(신규)

■ 지원내용
- 탄소섬유, 인조흑연 등 탄소소재 및 응용제품 기술개발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으로 구성되며, 과제당 3년 이내 연간 15억원 내외

■ 추진일정
- '11. 3 ~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15) 첨단메디컬 신소재(섬유) 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산업소재 분야 중 첨단메디컬 신소재(섬유) 개발 지원을 통해 주력기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

■ 지원규모 : 30억원(신규)

■ 지원내용
- 치료/수술용 섬유소재, 헬스케어/위생용 섬유소재를 중심으로 소재 및 융합제품 개발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과제로 구성되며, 과제당 5년 이내 연간 2~8억원 내외

■ 추진일정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16)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 연구기반구축사업

■ 사업개요
-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'전기자동차 기술강국'으로 도약하고, 세계적인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자동차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

■ 지원규모 : 30억원(신규)

■ 지원내용
- 그린전기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기술개발 및 기반과제로 구성

■ 추진일정(사업화 지원 기준)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17) 클린디젤자동차 핵심부품 산업육성사업

■ 사업개요
- 향후 5년 이내의 현실적인 대안인 그린카로서 클린디젤자동차의 핵심부품개발 및 조기 양산화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,
- 특화 분야별 체계적 지원(기술개발, 인프라 구축, 인력양성, 기업지원 등)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세계 4대 그린카 강국으로 도약

■ 지원규모 : 40억원(신규)

■ 지원내용
- 클린디젤자동차 핵심요소부품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기술개발 및 기반과제로 구성

■ 추진일정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18)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

■ 사업개요
- 고부가가치산업 및 미래 산업을 선도할 R&D 기초 및 고급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, 우수인력의 기업 공급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확충

■ 지원규모 : 609억원

■ 지원내용
- 산업분야의 학부, 석박사 인력 양성 지원 및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고용지원 등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단체 등 공공기관
- 지원조건 : 민간출연 25%이상,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있음

■ 추진일정
- '11. 2, 5월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4, 6월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, 7월 : 협약체결

※ 세부 사업별 지원 절차 및 공모 시기 등 상이

(19) 생산현장 종합지원사업

■ 사업개요
- 출연연이 중소 · 중견기업 생산현장의 기술혁신 요구사항을 적시지원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기술지원 허브시스템 운영
  - 현장 애로기술 해결, 불량률 감소 및 수율향상 지원, 각종 측정 · 분석 지원, 기술개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

■ 지원규모 : 51억원

■ 지원내용
- 산업기술 출연연 고경력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약 230개 기업에 현장애로 기술문제 해결 지원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
■ 추진일정
- '11. 3 ~ :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및 현장 애로 기술 지원(상시 지원)
  - 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 체결

(20) 기술혁신형 중소 · 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

■ 사업개요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산업기술 10개 출연연의 고급 연구인력을 장기간(3년 이상)파견, 산업계 기술혁신 지원

■ 지원규모 : 145억원(신규 45억원, 계속 100억원)

■ 지원내용
- 출연연 소속 고급 연구인력 총 300여명 지원
  - '10년 선발인력(200여명) 계속지원 및 '11년 추가 선발인력(100여명) 신규지원
- 시행주체 :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
- 지원대상 :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(기업 당 최대 2명)
- 지원조건 : 지원인력 인건비의 50%를 정부가 부담하고, 나머지 50%는 참여기업 매칭

■ 추진일정
- '11. 3 : 사업추진공고 및 참여기업 선정
- '11. 4 ~ : 지원 연구인력 선발 · 매칭, 지원근무 착수

(21)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국내 · 외에서 개발된 우수 ·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, 상품화개발 등 사업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 · 중견기업 육성

■ 지원규모 : 300억원(신규 140억원, 계속 160억원)

■ 지원내용
- 사업화기획, 추가기술개발, 상품화개발 등 개발기술의 사업화과정을 지원
- 지원대상 : 정부출연(연)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중소기업*, 중소기업이외의 기업**

* 중소기업기본법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

*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회사

- 지원조건 : 총 사업비의 60%이내

■ 추진일정(사업화 지원 기준)
- '11. 1 : 사업공고
- '11. 1 ~ '11. 9 : 사업자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

(22)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외국 기업 · 연구소 등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선진기술 습득 및 국내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

■ 지원규모 : 442억원(신규 150억원, 계속 292억원)

■ 지원내용
- 외국과의 양 · 다자간 공동기술개발 지원
- 지원대상 : 국제공동 R&D 컨소시엄(1개 이상 국내기업 및 외국기관 의무참여)
- 지원조건

사업구분	지원유형	지원금액	지원기간
양자간 국제공동	① 전략기술개발	연 10억원 내외	5년 이내
	② 수요기술개발	중소형 3억원 내외, 대형 10억원 내외	중소형 3년 이내, 5년 이내
	③ 글로벌 상용기술개발	7억 내외	5년 이내
다자간 국제공동	④ EUREKA	연간 3~5억원 내외	5년 이내
	⑤ EU FP 참여지원*	연간 3~5억원 내외	5년 이내

* 사전기획과제 비용(2천만원 내외)을 지원할 수 있음

■ 추진일정
- '11. 1 : 사업공고
- '11. 5 : 상반기 신청, 접수, 평가(세부일정 추후 공고)
- '11. 9 : 한반기 신청, 접수, 평가(세부일정 추후 공고)

(23)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-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정된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
■ 지원규모 : 1,182억원(신규 656억원, 계속 526억원)

■ 지원내용
- 지역별 전략산업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과제지정형과 자유공모형 기술개발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, 지역특화센터 등
- 지원조건
  - 자유공모형 : 3년 이내, 과제당 2억원/년 이내
  - 과제지정형 : 3년 이내, 과제당 5억원/년 이내

■ 추진일정(자유공모형 기준, ( )안은 과제지정형 일정)
- '11. 1 ('11. 5)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3 ('11. 7)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3 ('11. 7) : 협약체결

(24)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

■ 사업개요
- 광역권 내 시 · 도간 또는 광역권간 연계 및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와 광역경제권 발전 구체화 도모

■ 지원규모 : 약 500억원 예정(신규)

■ 지원내용
-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벗어나 산업공간에 기초한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조업, 융복합산업, 지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지원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3년 이내, 연차별 평가이후 계속지원 결정, 지자체 및 민간대응 필요

■ 추진일정
- '11. 4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5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6 : 협약체결

(25)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

■ 사업개요
- 산 · 학 · 연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

■ 지원규모 : 586억원(신규 120억원, 계속 466억원)

■ 지원내용
-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
- 지원대상 :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
- 지원조건 : 3년이내, 연간 6억원 내외, 지자체 및 민간의 대응투자(국비의 15~30%)

■ 추진일정
- '11. 2 : 사업공고 및 접수
- '11. 3 ~ 4 : 사업자 선정평가
- '11. 5 : 협약체결

(26) 표준기술력향상사업

■ 사업개요
- 기술의 개발 · 이전 · 확산 및 기술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및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, 국제표준화 동향 분석